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제1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제1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 목 적

- 2023년 5월,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면서 ‘국가유산’이라는 포괄적 개념을 통해 새로운 행정체계로 전환해나가는 시점이므로, 다양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래 국가유산 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탐색하고자 함

□ 개 요

- 주 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 일시/장소: 2023년 6월 30일(금) 14시~16시 20분, 국립고궁박물관 강당
- 참 석 자: 문화재청,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관계 전문가, 관심 있는 일반 국민 등

□ 세부일정표

사회: 조일형(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팀장)

시 간	일 정	주요내용
14:00-14:05 (5')	내빈소개	참석자(내빈) 소개
14:05-14:10 (5')	개 회 사	최응천(문화재청장)
14:10-14:15 (5')	기념촬영	국가유산 정책포럼 개최 기념 촬영
14:15-14:35(20')	주제발표①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방향 - 이은하(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14:35-14:55(20')	주제발표②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정상우(인하대학교 교수)
14:55-15:10 (15')	휴 식	휴식 및 장내 정리
15:10~16:20 (70')	국가유산 정책과제 토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좌장: 신희권(서울시립대학교 교수)○ 토론 *가나다 순<ul style="list-style-type: none">- 김태식(연합뉴스 선임기자)- 엄원식(전국학예연구회 회장)- 이광표(서원대학교 교수)- 정상철(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조홍석(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전문위원)- 진병길(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회장)
16:20	폐 회	폐회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차 례

“ 개 회 사 ”

최응천 | 문화재청장 · 01

“ 주제발표 ① ”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방향 · 03

이은하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 주제발표 ②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 17

정상우 | 인하대학교 교수

“ 토 론 문 ”

김태식 | 연합뉴스 선임기자 · 37

엄원식 | 전국학예연구회 회장 · 39

이광표 | 서원대학교 교수 · 41

정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 43

조흥석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전문위원 · 45

진병길 |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회장 · 48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재청장 최응천입니다.

문화재청은 국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유산의 가치를 온전히 향유할 수 있도록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포함하는 ‘국가유산’이라는 개념과 새로운 체제를 도입하기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해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 전문가들을 모시고, 국가유산 체제를 향한 전략을 수립하고자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유산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많은 분들의 노고로 지난달 16일 「국가유산기본법」이 공포될 수 있었습니다. 문화재청의 오랜 숙원이 이뤄지기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국가유산기본법」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체계를 개선하여 유네스코 국제기준과 부합하도록 하고 비지정 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기후변화 등 미래 정책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가유산 산업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의하는 등 문화재청의 업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제 국가유산 체제로 나아가기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으니, 「국가유산기본법」의 시행을 위해 앞으로 1년이 채 남지 않은 시간 동안 미래 비전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해야 할 시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고견은 성공적인 국가유산 체제의 문을 여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오는 연말에는 오늘의 정책 포럼을 구체화하여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선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내년 5월 17일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일 즈음에는 ‘국가유산청’으로 거듭나 진정한 국가유산 체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정책포럼을 개최하기 위해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말씀 드리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여러분과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심도 깊은 토의와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주제 발표
①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방향

이 은 하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원장

제1차 국가유산 정책포럼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방향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이은하

목 차

01.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 문화재 명칭의 한계
-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 문화재 법제 개편과 연계

02.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 주요 내용
- 의미 및 효과
- 향후 과제



1 |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문화재 명칭의 한계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문화재 법제 개편과 연계

1.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1. 문화재 명칭의 한계

“ **명칭 한계**
문화재(財) 용어가 확장된 문화재 정책범위를 포괄하는데 한계 내포, 시대변화를 반영한 재정립 필요 ”

- ① 과거 유물의 자산, 재화적 성격이 강함
- ②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년) 원용하여 우리 문화재보호법 제정(1962년, 명칭 및 분류체계 동일)
- ③ 자연물과 사람을 ‘문화재’로 표현, 부적합 지적
- ④ ‘문화유산’ 용어와 혼용(1990년대 후반) 등 명칭 변경 필요성 지속 제기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유형문화재(국보, 보물),
무형문화재,
기념물(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민속문화재,
전통적 건축군, 문화적 경관

* 분류체계의 비체계성: 유/무형 대분류를 적용하나, 기념물은 유형문화재, 민속문화재는 유형, 무형문화재에도 해당함

1. 문화재 명칭의 한계

“ 명칭 한계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정의와 사전적 의미의 일반인 인식과의 차이 존재 ”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

문화재보호법상
정의



사전적 의미
(표준국어대사전)

문화 활동에 의하여 창조된
가치가 뛰어난 사물

1. 문화재 명칭의 한계

[국제기준] 유네스코 국제규범상 개별 유산들을 총칭하는 용어 사용 부재, 국가별로는 다양

- 각 국가들은 협약 제정 당시 운영하는 자국의 법령용어에 맞추어 협약의 명칭을 번역
- 자국의 법령체계에 맞추어 별도의 용어로 자국의 유산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 운영
- 하나의 법률에서 유산들을 총칭하는 용어 사용 국가와 개별 법률에서 유산별로 별도의 용어 사용 국가로 구분

<국가별 유산보호를 위한 법령 제정·운영 방식>

구분	국가명	상위분류(근거법령)	결과
하나의 법률에서 유산들을 총칭하는 용어 사용	한국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일본	문화재(문화재보호법)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 기념물, 전통적 건조물군, 문화적경관
	프랑스	유산(유산법전)	역사적 기념물(부동산문화재, 동산문화재), 자연·문화유적지(자연기념물, 자연문화유적지)
	북한	민족유산(민족문화유산보호법)	물질유산(역사유적, 역사유물),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명승지, 천연기념물)
개별 법률에서 유산별로 별도의 용어 사용	영국	동산문화재	보물
		부동산문화재	선정기념물, 등록공원·정원, 등록전쟁유적지, 등재건축물, 등재보존구역, 난파선보존구역
	중국	문물	이동가능문물, 이동불가문물, 문물집중지
		비물질문화유산	언어 및 문화작품, 전통예술, 전통기술, 민속의례, 전통체육 및 연희, 기타
		풍경명승구	자연경관, 인문경관 비교 집중
자연보호구	생태계 등, 동식물생물권, 특수지형, 자연유적, 기타		

1.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2.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 상이, 일관된 기준 필요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확대 등 국제교류·세계화 확대 추세에 걸맞게 국제 기준과의 정합화 필요



- 유네스코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1972)>을 기점으로 국제적인 유산 개념의 도입, 보편화가 시작될 이후 <수중문화유산 보호협약(2001)>,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2003)>이 별도로 체결됨

※ 통용되고 있는 '문화유산' 용어는 세계유산 협약상 자연유산을 포괄하지 못함

1.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2.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 상이, 일관된 기준 필요

-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의 세계유산 분류체계 및 규율범위

분류체계		규율범위	비고
문화유산 (Cultural Heritage)	기념물 (Monuments)	▪ 건축물, 기념비적 조각과 회화, 고고학적 성격의 유물 및 구조물, 금석문, 첩거지, 그리고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여러 요소의 복합체	세계유산협약 제1조
	건물군 (Groups of buildings)	▪ 독립되거나 연결된 건물들의 군집체로서 그의 건축, 품질성 또는 경관에서의 장소로 인해 역사, 예술 또는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유적지 (Sites)	▪ 사람의 소산 또는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그리고 고고학적 유적을 포함한 지역으로서 역사, 미학, 민족학 또는 인류학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자연유산 (Natural heritage)	▪ 물리적·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이러한 생성물의 집합체로 구성된 자연의 특징물로서, 미학이나 학술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지질학적·지형학적 생성물, 그리고 멸종위기에 처한 동식물종의 서식지를 이루어 정확하게 구획된 지역으로 학술 또는 보존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 자연 유적지 또는 정확하게 구획된 자연지역으로 학술, 보존 또는 자연미의 관점에서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갖는 것	세계유산협약 제2조	
문화 및 자연 복합 유산 (Mixe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 협약의 제1조 및 제2조에 명시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관한 정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족시키는 유산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46항	
문화경관 (Cultural landscapes)	▪ 문화재이자 협약 제1조에 지정된 자연과 사람의 합작품	세계유산협약 이행을 위한 운영지침 제47항	

1.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2.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 상이, 일관된 기준 필요

-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무형문화유산 분류체계 및 규율범위

분류체계		규율 범위	비고
무형문화유산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집단과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술 및 이와 관련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 공간 	무형유산협약 제2조제1항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수단으로서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나. 공연 예술 다. 사회적 관습·의식 및 제전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관습 마. 전통 공예 기술 	무형유산협약 제2조제2항

9

1.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2.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 필요성

[국제기준] 유네스코 유산 분류체계와 국내 분류체계 상이, 일관된 기준 필요

- 유네스코 유산보호 관련 협약의 규율 범위

조약(협약)명	채택일(발효일)	규율 범위	비고
세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1972. 11. 16. (1975. 12.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 자연유산: 자연의 기념물, 동물 및 생물의 종의 생식지 및 자생지, 자연지역이나 자연 유적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부동산의 유형 문화재 및 기념물 중 사적 자연유산: 부동산의 기념물 중 명승 및 천연기념물
수중문화유산 보호에 관한 협약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2001. 11. 02. (2009. 01.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분적이거나 전체적으로, 간헐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최소 100년간 수중에 위치해온 문화적, 역사적 또는 고고학적 성격을 지닌 인류의 모든 흔적 	수중에 있는 유형의 동산과 부동산(한국 미기입)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협약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2003. 10. 17. (2006. 04.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동체·집단 및 때로는 개인이 자신의 문화유산의 일부로 인식하는 관습·표상·지식·기술 및 이와 관련된 도구·물품·공예품 및 문화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유산: 무형문화재, 민속문화재와 관련된 무형 유산 및 유형물 포함

10

1. 국가유산 체제 전환 배경

3. 문화재 법제 개편과 연계

문화재 개념 및 보호제도 범위 확대

- 문화재 정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문화재 관리주체 및 수단 확대와 문화재보호법 분법 및 문화재법령 확대가 이루어짐

제정

문화재보호법(1962) → 문화재보호기금법(1999) → 고도보존법(2004) → 문화유산신탁법(2006)
→ 문화재수리법, 매장문화재법(2010) → 무형문화재법(2015) → 신라왕경특별법(2019) →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특별법, 풍납토성특별법(2020) → 자연유산법(2023)

발의

근현대유산법(2020) → 국외소재유산법, 궁능문화유산법, 수종문화재법(2021) → 문화재영향진단법(2022)
* 문화재 용어 일괄 변경(문화재 → 문화유산)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법, 등 5개 법률 개정안 발의(2021)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1. 주요 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주요 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3. 05. 16. 제정, 05. 17. 공포)

명칭 재정립

- 문화'재(財)' ⇒ 국가유산(遺産) 으로 변경
 - 과거 유물 재화 개념의 '문화재' 탈피, 과거·현재·미래를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
 - 문화재(재화, 사물, 과거, 행정, 규범적 한정) → 유산(계승, 활용, 미래, 포괄적 보호로 의미 확장)

국가유산 분류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하고, 통칭으로 '국가유산' 용어 채택
 - * 국가유산 : 한 국가의 총체적 유산, 세계유산 대칭(상응) 개념, 헌법상 문화국가 실현, 국가의 유산 보호 책임 표방, 국내외 '국가유산' 사용 사례 참조

지정등록 체계 개선

- 기존 지정·등록유산 외 '비지정유산' 포괄적 보호체계 마련
 - 보호사각지대에 있는 비지정유산(향토유산등), 미래 잠재적 유산 보호 기반 강화
 - *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에서 포괄적 보호체계 정책 전환

13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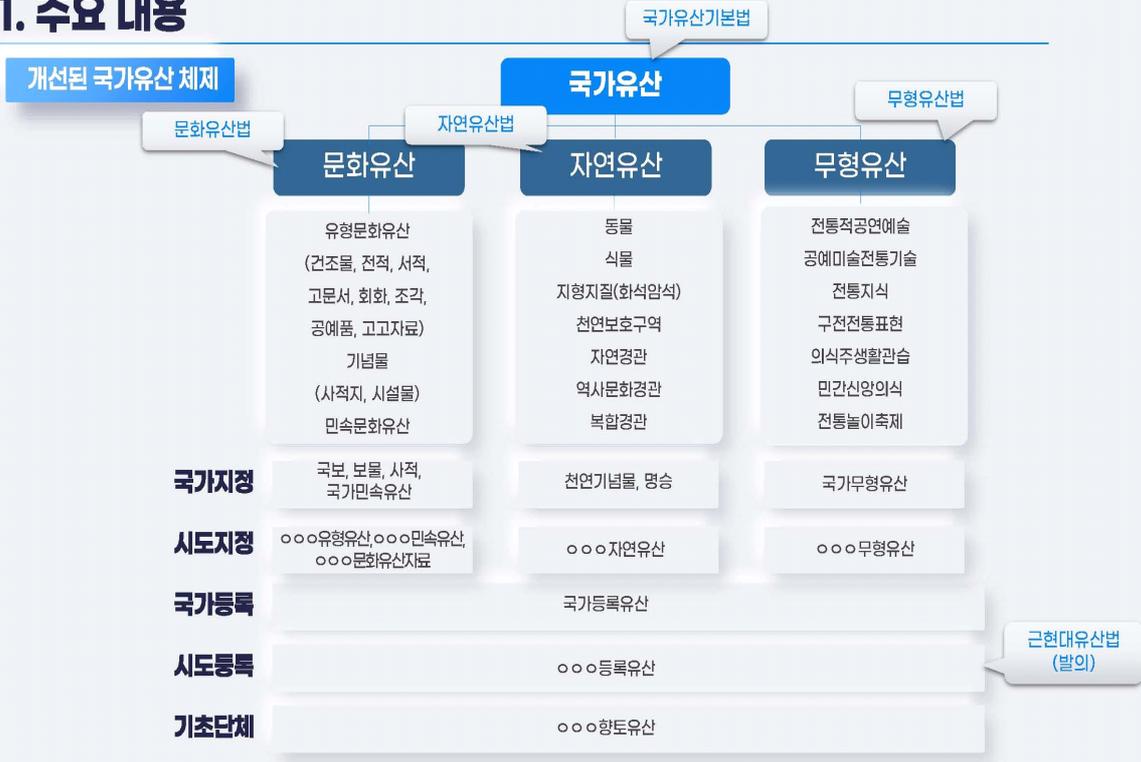
1. 주요 내용



14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1. 주요 내용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2. 의미 및 효과

“ 국민 친화적·미래지향적 유산 보호 정책기능 대전환 기반 마련 ”

- 대국민 관점**
 - 유산의 확장을 통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 즐길거리, 볼거리, 체험 콘텐츠 공급, 일상생활 속 향유 활성화
 * 역사·인물 중심 스토리 기반 유산 해설·홍보, 유산 애호의식 함양
- 국제적 관점**
 - 국제전문가 교류·네트워킹 활성화 속 세계유산 등재 여건 강화, 우리 유산 우수성 세계 확산, 주변국 역사왜곡 대응력 확대
 * 세계유산 등재 국제회의의 국내 유치 추진 등
- 유산 보호·활용 관점**
 - 유산 본질적 가치 규명, 각 분야별 전문가 보호체계 마련으로 국가유산 관리시스템 혁신, 포괄적·과학적·전문적 보호망 아래 폭넓은 활용·향유프로그램 확대 도입
 * 4차 산업혁명 기술과 접목한 유산 가치 극대화 보호시스템 완비
- 경제, 지역활성화 관점**
 - 지역관광 거점 으로 육성, 지역주민·공동체와 함께 유산 활용프로그램 운영, 지역정체성·차별성 지닌 특화자원 역할 수행
 * 마을단위에서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유산형 경제모델 구축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2. 의미 및 효과

경제적 효과

-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 결과

구분	생산 유발효과(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억원)	취업 유발효과(명)
① 국민인식조사	2,942~ 3,503	1,870~ 2,120	2,550~ 2,905
② 산업연관분석	4,151	1,938	2,702

- * [분석기관/방법] ①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경제전문가 참여) / 인식적 관점: 국민인식조사
(효과성 설문 및 지불의사 측정 방식 합계)
② 한국산업개발연구원(민간) / 계량적 관점: 산업연관분석

- 국가유산체제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 시 각 분야별 보존·관리·활용 확대 기대, 이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됨

17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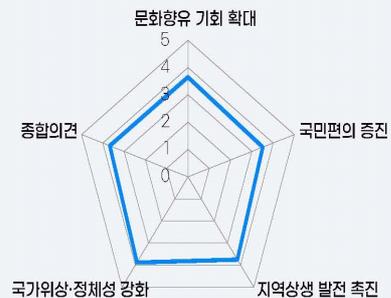
2. 의미 및 효과

사회적 효과

- 국가유산 체제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 분석결과 종합

사회적 영향	평균값
문화향유 기회 확대	3.65
국민편의 증진	3.51
지역상생 발전 촉진	3.75
국가위상·정체성 강화	3.88
종합의견	3.67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22.08)



-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에 따른 사회적 효과는 모든 항목이 **중간값인 3점보다 높아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국가유산 체제가 도입, 운영되고 국민의 체감 수준이 높아진다면 긍정적 효과 인식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18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3. 향후 과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유산 정책 과제(신규과제)



II. 국가유산 체제 주요내용 및 의미

3. 향후 과제

신규제도 도입에 따른 국가유산 정책 과제(지속과제)



감사합니다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주제 발표
②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정 상 우
인하대학교 교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2023. 6. 30

인하대학교 정 상 우 교수



[목 차]

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의
2.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3.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4.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유산별 법체계 정비
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정책적 과제



1-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의

❖ 국가유산 용어 도입

- 문화재 용어는 국가주의 하의 일본으로부터 영향, 문화재 용어는 점 단위, 원형유지 및 경직성의 한계
- 문화유산은 최근 세계유산협약으로 인해 자연유산과 배타적 개념으로 정착

❖ 국가+유산

- 국가: 공동체를 의미하고 '세계'유산 용어에 대응하며 유산의 가치와 권위, 국가의 보호 책무 강조
 - ✓ 국가문화유산포털, 국가지정문화재(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국가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국가지질공원, 국가정원, 국가중요과학기술자료, 국가중요기록물 등
- 유산: 유산 용어는 세계유산 협약에 따른 것으로 "과거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현재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고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자산", 재산적 가치가 아닌 공동체 의미를 강조

❖ 국가유산 개념의 적절성

- 첫째, 포괄적 개념으로 보호 범위 확대
- 둘째, 지속가능성을 강조하고 과거에서 미래로 물려주어야 할 것이라는 개념
- 셋째, '국가' 용어는 국가의 책임성 강화
- 넷째, '유산' 용어 사용으로 사적 소유 관념에서 공동체 가치로 전환
- 다섯째, 세계유산 협약에 대응 유리

3

1-2. 국가유산 용어의 장점

용어	장점	약점
문화재 (1927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년간 사용한 용어 - 법률상 무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포괄 - 법률상 비지정문화재 포함 - 정부조직 명칭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어의 기원인 독일의 문화재는 무형, 명승, 천연기념물 등 제외 - 학술적으로 문화유산, 역사문화자원 등보다 좁은 개념 - 지정 또는 등록에 한정하는 이미지 - 문화재 아래 무형유산, 자연유산이 포함될 경우 용어 사용 한계
문화유산 (1969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ultural heritage 번역으로 적합 - 문화유산 현장에서 용어 채택 - 후대에 계승해야 한다는 인식 - 문화유산신탁법(2006)에서 용어 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유산협약에 따라 경우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배타적 개념 - 국민신탁법상 문화유산 용어도 단순히 문화재+보호구역 등으로 개념상 협소
국가유산 (2013년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기록유산 등 포괄 용어 - 세계유산에 대응 개념 - 유산 개념에 전대의 문화적 소산 이외에 후대에 계승 가치 포함 - 보호 방법에 있어 동결보존보다는 다양한 보호 방식 인정 용어 - 개인 소유보다 공동체 가치 중시 - 타부처 유산 관련 정책에 통일성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청 정부기관 명칭 수정 필요

4

1-3. 국가유산기본법의 헌법 적합성

- ❖ 헌법에서 전통문화 보호 책무와 국가유산
 - “제9조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
- ❖ 헌법정책의 기본법 사례와 조응
 - 복지, 교육, 환경, 안전, 산림, 가족 등
- ❖ 문화재보호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세계유산 체계와 적합성 제고
 - 미래지향적 보호 체계 정립
- ❖ 비교입헌례와 헌법정책론
 - 최근 헌법이 개정된 주요 국가에서는 문화유산과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명시
 - 우리나라 헌법개정시 전통문화, 민족문화 대신 국가유산 또는 문화권 등을 명시할 필요
- ❖ 동아시아 문화전쟁 대응 역량
 - 역사학에서 경쟁

5

1-4. 기본법 제정의 의의: 문화재보호법의 한계 극복

- ❖ 문화재보호법의 잦은 개정으로 인한 체계 복잡성 완화
 - 거의 매년 개정, 안전, 교육, 국외소재문화재, 상시적 예방관리(돌봄), 지능정보화, 벌칙조항 등
- ❖ 문화재 분류체계 및 보호범위의 체계화
 - 문화재 분류체계 혼선을 개별법으로 극복
 - 문화재보호법은 사실상 ‘지정문화재법’이었으나 국가유산기본법은 포괄적 보호 원칙
- ❖ 문화재 보호 원칙의 경직화 극복
 - 원형유지원칙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박제화 및 권력화 현상
 - 국가유산기본법의 국가유산보호 원칙 다변화
- ❖ 문화재 행정과의 부조화 극복
 - 9개 이상의 과가 문화재보호법 운용(수리기술과, 발굴제도과, 무형문화재과 등을 제외한 정책총괄과, 안전기준과, 보존정책과, 유형문화재과, 천연기념물과, 활용정책과, 국제협력과, 근대문화재과, 문화유산교육팀 등)
 - 분법에 따라 개별법을 과별로 운영
- ❖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의 문화재 보호 역량의 제고
 - 전담인력 또는 전문인력 확보

6

2-1. 국가유산 보호를 위한 법체계 정비

❖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증가

- 문화재보호법('62년) → 문화재기금법('99년) → 고도보존법('04년) → 문화유산신탁법('06년) → 문화재수리법, 매장문화재법('10년) → 무형문화재법('15년) → 신라왕경법('19년) → 세계유산법, 역사문화권법, 풍납토성법('20년) → 자연유산법('23년) → 국가유산기본법('23년)

❖ 다양한 입법 수요

- 근현대유산법, 국외소재유산법, 궁능문화유산법, 문화재활용법, 수중문화재법, 문화재영향진단법 등 제정안 발의
- 국가유산교육법, 국가유산재난안전법, 국가유산지능정보화법 등 분법 요소

7

2-2. 국가유산 법체계 정비 필요성: 미래환경 변화

❖ 국가유산 주변 환경 변화

- 사회환경 변화: 도시화 및 지방소멸 기후변화와 재난 발생, 인구감소, 고령화
- 경제환경 변화: 문화재 브랜드화, 4차산업혁명, 문화유산의 성장동력화
- 국제환경 변화: 주변국가의 문화재에 대한 관심, 유네스코의 각종 협약
- 관련 부처의 유산에 대한 관심: 전통사찰, 자연환경자산, 한옥 및 우수건축자산, 국가중요농업유산, 국가중요어업유산, 산림문화자산, 공원문화유산지구, 해양문화자산, 지역문화고유원형, 지방자치단체의 미래유산, 향토유산

❖ 보호 원칙의 재정립

- 새로운 분류체계에 따른 체계정합적 보호 원칙 재정립
- 계승, 활용, 미래지향, 포괄적 보호 원칙 요구

8

2-3. 국가유산 보호 원칙 전환

문화유산현장 및 현행 문화재보호법	국가유산기본법	분류체계에 따른 보호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유산 현장: “원래의 모습”에서 “원래 모습과 가치”로 완화 현행 문화재보호법: 원형유 지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유산 모습과 가치의 보호 경관 및 주변 환경과 조화 지속가능한 보호 참여와 향유 증진 면으로서 보호 지역의 정체성 및 발전의 기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무형문화재법: 1) 전형유지 및 민족정체성, 2) 전통문화의 계승 및 발전, 3) 무형문화재의 가치 구현과 향상 자연유산법: 1) 인위적인 간섭 배제 및 자연유산의 고유한 특성 반영, 2) 보존, 관리 및 지속가능한 활용의 조화, 3) 재산권 침해 금지

9

2-4. 국가유산 분류체계 정비



10

2-5. 문화유산 분류체계

중분류	세부 대상(예시)
건 축	궁궐, 사찰, 관아, 객사, 서원, 향교, 석탑, 석비 등
유 적	성곽, 사지(절터), 가마터, 왕릉, 고분(군) 등
미 술	회화, 서예, 조각(불상 등), 공예품(도자 등)
기 록	서적, 전적, 문서 등
과 학	과학기기(예: 측우기, 해시계 등), 무기·화기
고고자료	선사시대 유물, 고분·패총·사지·유적 등 출토품
산업생활	근현대 산업·생활품(예: 임복동 자전거, 김소월 시집)
민 속	가옥(고택 등), 제당, 의복, 가구, 장승 등

11

2-6. 자연유산 분류체계

중분류	세부 대상(예시)
동·식물	(천연기념물) 진도개, 두루미, 나무(숲), 군락지 등
지형지질(화석암석)	(천연기념물) 동굴, 주상절리대, 화석산지 등
천연보호구역	(천연기념물) 독도, 한라산, 설악산, 홍도 등
자연·역사문화·복합경관	(명승) 한라산 백록담, 담양 소쇄원, 거제 해금강 등

12

2-7. 무형유산 분류체계

중분류	세부 대상(예시)
전통적 공예예술	종묘제례악, 판소리, 강강술래, 아리랑 등
공예미술전통기술	나전장, 조각장, 단청장, 소목장, 대목장 등
전통지식	해녀, 제염, 전통어로방식(어살) 등
구전전통표현	수수께끼, 민담, 설화 등
의식주생활관습	문배주, 경주교동법주, 장담그기, 김치담그기 등
민간신앙의식	영산재, 양주소놀이굿, 제주칠머리당영등굿 등
전통놀이축제	씨름, 단오제, 택견, 기지시줄다리기 등

13

2-8. 국가유산 보호 범위 확대

❖ **현행:** 지정문화재 중심의
중점보호주의

❖ **국가유산 체계:** 비지정문화
재까지 확대하여 목록으로
관리하는 포괄적 보호주의
정책 전환

개선(전)	개선(후)
① 국보, 보물, 사적, 천연기념물, 명승 ②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민속문화재	① 현행 유지 ② 국가무형유산, 국가민속유산
① 시도유형문화재, 시도무형문화재, 시도민속문화재 ② 시도기념물(폐지) ③ 시도문화재자료	① 시도유형유산, 시도무형유산, 시도민속유산 ② 시도자연유산(명칭 변경) ③ 시도문화유산자료
① 국가등록문화재 ② 시도등록문화재 ※ 유형문화재 한정	① 국가등록유산 ② 시도등록유산 ※ 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① 향토문화재(비지정문화재) ※ 법적근거 無, 유형문화재 한정	① 향토유산 ※ 법적근거신설, 무형·자연유산까지 확대

14

2-9. 국가유산 보호 및 활용 강화

❖ 과학적 보호

- 보존처리, 수리, 복원 등의 과학화
-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 체계화

❖ 국가유산의 다양화

- 복합유산의 보호: 문화유산+자연유산, 문화유산+무형유산, 무형유산+자연유산 등
- 디지털유산

❖ 면으로서 보호

- 보호범위 확대 및 경관과의 조화: 보호구역+역사문화환경
- 공간단위 보호: 민속마을, 근현대역사문화공간, 고도(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권 등

❖ 미래환경변화

- 디지털유산
- 기후환경변화에 따른 대비

❖ 국가유산 활용

- 교육
- 관광
- 산업
- 복지
- 콘텐츠

15

3-1.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정]

❖ 제정이유

- 국가유산 정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유산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창조적으로 계승하여 국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가. 국가유산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말함(제3조).
-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의 유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하는 한편,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해 가치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제7조).
- 다. 참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지역 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제12조).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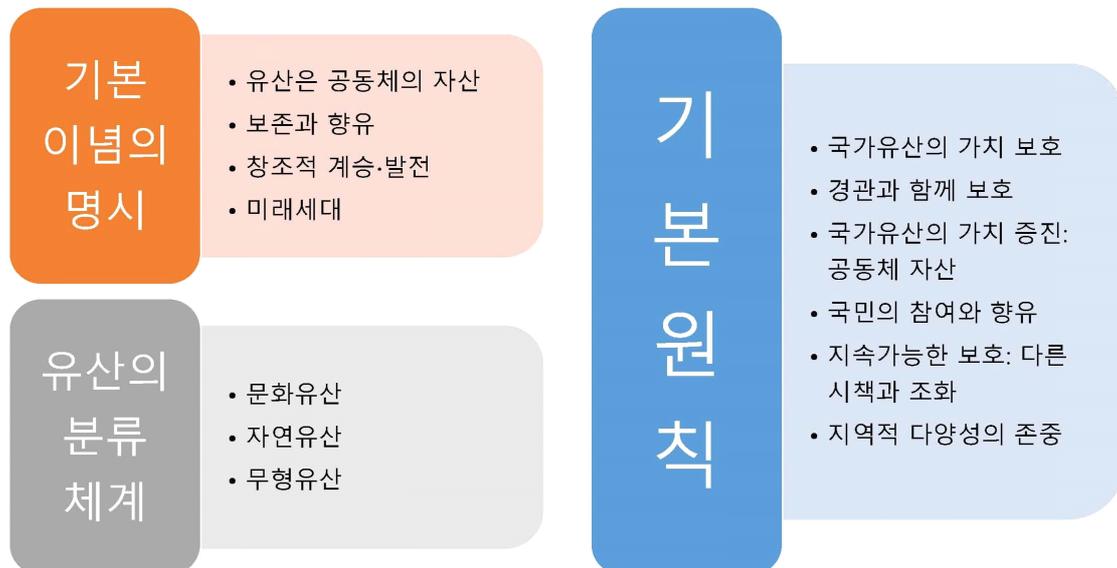
3-2. 국가유산기본법의 주요 내용

❖ 주요내용

-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정·등록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국가유산이 될 잠재성이 있는 자원을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제14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후변화가 국가유산에 미치는 영향과 그에 따른 국가유산의 취약성을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제22조).
- 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며,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제23조).
- 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기술들의 적용·융합을 통해 국가유산데이터를 생산·수집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함(제24조).
-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을 활용한 산업을 장려하고, 관련 일자리 창출을 위해 취업·창업 등을 촉진 시켜야 함(제27조).
- 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네스코에 세계유산, 인류무형문화유산 또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국가유산을 비롯한 인류의 유산을 보존하고 국가유산을 국외에 널리 알리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함(제31조).
- 차. 국가유산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정함(제34조).

17

3-3.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



18

3-4.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

문화재 행정의 변화

- 국가유산 유형별 계획
- 국가유산 유형별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보호 전담인력
- 문화재를 향유할 권리를 명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관리

- 지정·등록 체계 이외에 포괄적 보호 체계 도입, 예비문화재 근거 마련
- 역사문화환경 및 문화재영향진단 근거 마련
- 고도, 역사문화권 등 면단위 보호 체계
- 매장법 및 수리법, 국가유산 매매 체계화
- 재난 예방 및 대응 강조
- 기후변화 대응 최초 규정

19

3-5.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변화

국가유산 활용·진흥

- 국가유산복지
- 국가유산정보
- 국가유산교육
- 국가유산홍보
- 국가유산산업

유산의 세계화

- 국제교류 협력
- 남북한 교류 협력
- 외국유산의 보호
- 세계유산 등재 및 보호 노력
- 한국문화재단 → 국가유산진흥원으로 전환

20

4-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유산별 법체계 정비

❖ 분법체계 필요성

-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 유네스코 세계유산 체제와 정합성
- 유형별 보호원칙의 재정립

❖ 법체계 정비 방향

- 유형별 보호 및 활용 방법 구체화
- 기본계획 수립 및 위원회 운영 개별화
- 중분류 체계 유형 반영
- 현행 문화재보호법 운영상 미비점 정비

21

4-2. (가칭)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현행 문화재보호법의 복잡성과 비체계성

- 1962년 제정 이후 70여 차례 개정

❖ 문화재 용어 → 문화유산으로 전환

- 무형문화재, 명승, 천연기념물 등 제외
-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수정

❖ 변화 방향

- 정의 및 중분류체계 정비: 일본법에서 탈피
- 기본법과 체계정합성 유지를 위한 정비
- 현행 지정, 보존, 관리 체계 발전적 유지

❖ 기대 효과

- 보존, 관리, 활용의 모법 기능
- 국민들의 참여와 향유 강화

22

4-3.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시행 2024. 3. 22.] [법률 제19251호, 2023. 3. 21., 제정]

❖ 제정이유

- 자연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보존의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자연유산의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보존·관리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자연유산의 체계적·미래지향적 보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천연기념물·명승 활용사업 추진 및 규제대상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국민 불편·부담을 해소함은 물론 문화재 향유기회를 확대하여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자연유산 용어의 도입, 자연유산 보호계획(5년마다), 자연유산 관리협약
- 국립자연유산원, 비무장지대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등 활용 관광활성화와 지역주민 생활환경 개선 지원
- 천연기념물 동물 유전자원 보전과 식물 후계목 육성 보급

23

4-4.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 2015년 제정 이후 개정 경과

- 2018년: 전수교육조교에 대한 명예보유자 인정
- 2020년: 전수교육조교를 전승교육사로 명칭 변경
- 2022년: 전승주체에 전승공동체 포함, 인류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근거 마련

❖ 발전 방향

- 무형문화재 용어 무형유산으로 정비: 이 법 제정안에서 '무형문화유산' 용어로 제안되었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무형문화재'로 수정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학계의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음
- 무형문화재 정의 및 유형을 무형유산법에 이관하여 규정
- 등록 무형유산 도입 검토
- 무형유산 정보화, 미래사회에 적합한 보호체계

24

5-1.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법적·정책적 과제

문화재보호법 분법 수요	국가유산기본법 위임 사항	국가유산기본법 추가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교육 • 문화재지능정보화 • 문화재재난안전 • 문화재매매 • 국외소재문화재 • 문화재반출 • 국유문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유산복지 • 국가유산산업 • (가칭) 미래유산 또는 예비문화재 • 기후환경변화 대비 • 영향진단(유산영향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록유산 • 면단위 보호 체계화 • 역사문화권정비법 • 고도=역사문화도시: 고도육성법은 특별법이 아니며 신라왕경, 풍납토성 등이 특별법 • 근대역사문화공간 • 민속마을(문화재 개념으로 접근 곤란)

25

5-2.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체계화

❖ 배경

- 국가유산기본법 취지 반영
-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의 독자적 발전 기대

❖ 유산 개념의 확장

- 기록유산, 미래유산, 역사문화자원 = 목록유산
- 산업유산, 생활유산, 디지털헤리티지 등 관심

❖ 면단위 보호(문화재 개념에서 탈피)

- 고도(역사문화도시), 역사문화권 정비, 신라왕경, 풍납토성, 세계유산도시(세계유산마을)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민속마을
- 경관과 함께 보호: 역사문화환경

❖ 참여와 활용

-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국가유산 보호 - 민간참여 모델 구축, 민간과 유산보호협약(자연유산 등)
- 문화재 향유권 확대
- 국가유산 복지: 전승자 복지, 사회적 취약계층의 접근권

26

5-3.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지역화

- ❖ 배경
 - 인구감소, 문화다양성, 문화재 활용과 향유 강조
 - 시도유산 체계화(지정, 등록, 향토)
- ❖ 지역 소재 국가유산 관리
 - 지방자치단체 역할 제고와 국가유산 관리 거버넌스 재정립: 중앙정부로는 한계, 현장역량 강화 필요
 - 전담기구, 전담관 및 전문인력 확대
- ❖ 지역재생에 기여
 - 지방문화원은 유산전승관으로 활용 또는 전환
 - ✓ 박물관, 미술관 지방문화원 등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 전수교육관 등록제 도입
 - 근현대문화유산지구, 민속마을 등
 - 문화재영향진단, 세계유산 영향평가 체계화
- ❖ 국가유산 교육 및 복지
 - 학교 또는 시민대상 국가유산 교육: 발간된 인정도서 활용, 찾아가는 국가유산, 생생문화재 등
 - 유산에 대한 접근가능성 제고(장애, 국적, 지역, 계층, 세대 등에 따른 접근의 어려움)
 - 유산 관람시스템 정비

27

5-4.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정보화·산업화

- ❖ 배경
 - 4차산업혁명과 기후환경 변화 등
 - 국가유산 콘텐츠에 대한 관심, 국가유산 활용 및 부가가치 요구, 새로운 성장동력 요구
- ❖ 지능정보화
 -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국가유산 정보화
 - 디지털유산, 디지털 콘텐츠
- ❖ 연구개발(R&D)
 - 전통기술, 보족복원기술, 재난안전기술 등 국가유산 기술 개념 정립
- ❖ 산업화 전략
 - 보존과학, 복원산업, 재료산업, 재난안전 산업 등 국가유산 가치 유지에 기여
 - 이른바 국가유산 원형자원 민간에 보급
- ❖ 국가유산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
 - 국가유산 관련 종사자 확대
 - 전문인력 양성 다변화(대학, 연구기관, 진흥원 등)

28

5-5.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과제: 세계화

❖ 배경

- 국가유산과 역사에 대한 세계적 경쟁

❖ 주변국가와의 역사왜곡에 대응

- 국가유산은 비정치적 분야

❖ 통일대비 국가유산 조사 및 연구

- 남북한 민족공동체를 문화공동체로 발전
- 비무장지대

❖ 세계유산 체제 대응

- 기록유산에 대한 관심

❖ 국제교류

- 공적개발원조(ODA) 다각화 및 확대
- 국가유산 국제교류 기관

29

감사합니다

30

국가유산,
미래를 담은 문화재의 새 이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특
론
문

김태식 | 연합뉴스 선임기자

엄원식 | 전국학예연구회 회장

이광표 | 서원대학교 교수

정상철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교수

조흥석 | 문화재위원회 사적분과 전문위원

진병길 |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회장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에 즈음해

김 태 식

연합뉴스 선임기자

문화재 존재 기반을 이루는 문화재보호법을 근간에서 뜯어고쳐야 한다는 비판을 거듭한 나로서는 문화재청이 그에 부응해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았겠지만, 나 좋은 식으로 해석한다면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그에 대한 부응 혹은 호응이라 자화자찬하고 싶다. 이는 그만큼 이 문제가 다른 어떤 문화재 현안보다 절박했지만, 또 그런 절박성을 적어도 이 업계에서는 공감하는 문제였지만, 어느 누구도 성큼 시도하기는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 새로운 법 제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유산을 보는 관점 제시를 나는 적극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물론 법률 제정이 곧바로 인식 전환까지 불러올 수는 없다. 하지만 이를 발판으로 이 법이 표방하는 정신이 현장에서 조속히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문화재’라는 말은 ‘유산’으로 대체한다. 다만 전자에 견주어 후자는 여러 문제가 없지는 아니해서 무엇보다 동의다의어라는 점에서 선뜻 유산이라 했을 때, 그 의미를 heritage가 독점하거나 혹은 압도적으로 선점하는 위치를 지니지 못한다는 점에서 나는 시대 흐름을 반영해 과감히 저 유산이라는 말도 버리고 차라리 그냥 헤리티지라는 말로 갔음 어떨까 하는 생각도 심각히 해봤다. 물론 그걸 한다 했을 때, 지금의 문화재청은 한글을 지상명령으로 삼는 단체나 그 회원들한테서는 용단폭격을 피하지 못했을 테지만 말이다.

애초 문화재청이 이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또 그 일환으로 어떤 기회가 주어져 나한테도 문의 비슷한 것이 왔을 때도, 할 말이 많았지만 그런대로 인내하곤 했으니, 뭐 내가 기를 쓰고 반대한다 했었던들 이 법률이 제정되지 않는지는 않았을 것이니, 그래 지켜보자, 작금 드러난 문제들은 향후 차차 하나씩 고쳐나가면 되지 않느냐 하는 포기 혹은 낙관이 교직했다고 말해둔다.

단순히 용어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성하는 여러 하위 범주에 대한 개편도 일어났으

니, 이번 법률 제정 근간을 추동한 것이 세계유산협약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다만, 그 한국적 풍토 혹은 기반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어 내가 보기엔 어정쩡한 임시 봉합도 없지는 않으니 그 하위 범주로 문화유산과 자연유산, 그리고 무형유산으로 삼분한 점은 심각한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

내가 매양 하는 말이지만, 무엇을 분류할 때는 그 준거 기준은 동일해야 한다. 사람 키를 재는데 어떤 이는 미터법으로 재서 170센티미터라 하고, 다른 이는 피트법을 적용해 3피트2인치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유산을 그 형성에 인간의 힘이 작동했으나 그렇지 아니했느냐를 기준으로 할 때는 오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있을 뿐이다. 현재의 문화재청 조직 혹은 업무, 혹은 기존 법률을 감안해 무형유산을 따로 떼어낸 일은 두고두고 문제가 된다. 무형이라 함은 형태를 전제로 한 것이며, 이 경우 그 형태는 인간을 전제로 한 것이다.

따라서 무형유산은 엄연히 문화유산에 속한다. 무형유산이라는 개념은 유형유산에 대비할 뿐이지, 그것이 어찌 문화유산 혹은 자연유산과 병렬로 존재할 수 있겠는가?

기타 세세한 부분에서도 손을 대야 할 것이 많지만, 이 대목은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따라서 국가유산기본법은 어느 법률이나 그렇듯이 이제 시행과 운용, 그리고 개선을 향해 달려야 한다고 본다.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업무의 방향과 과제

엄원식

전국학예연구회 회장

60년 만에 문화재 명칭 및 분류 체계 개편을 담은 『국가유산기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내년 5월 17일부터는 문화재가 아닌 국가유산으로 공식적인 명칭 변경이 이루어집니다.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 “비지정문화재” 또는 “향토유산”이라는 단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관련 종사자로서 무척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매년 12월 9일을 「국가유산의 날」로 지정함으로써 공식적으로 문화재인의 긍지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작년 7월 현, 문화재청장의 취임 첫 언론간담회시에 1)국가유산 체제 전면 전환 2)문화유산의 온전한 보존과 고품격 활용 3)문화재와 국민이 상생하는 정책 추진 4)세계 속 우리유산 가치 확산이라는 정책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핵심 추진과제 내용은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 체계를 전면 개편해 미래지향적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문화재 정책의 기본 방향과 원칙을 담은 문화, 자연, 무형유산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법으로 법체계를 정비해 다양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고 문화재 정책 기반을 확장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눈여겨 볼만한 내용은 그간 지정문화재 중점보호에서 비지정까지 확장된 포괄적 보호로 정책을 확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지난 2020년 대구, 경북, 강원을 필두로 시작된 대한민국 비지정(역사문화자원) 문화유산 현황작업을 통해 조사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문화재청의 의지를 보인 사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국가와 시도지정문화재를 합한 수량은 1만 5천점이 약간 넘습니다. 여기에 내년까지 완료될 역사문화자원을 다 합치면 약 8만점에 이르며, 무형유산과 매장문화유산을 합하면 10만점을 훨씬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앞으로 열배나 늘어날 문화유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관리할 수 있는냐의 문제가 대두 된다는 것입니다. 경상북도의 예를 들면 현재 문화재 업무와 박물관 업무를 보는 연구직은 모두 합쳐서 96명입니다. 이 중 박물관에 46명이 근무하고 문화재 업무에 50명이

각 시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각 시군별로 문화재 업무를 보는 행정직렬, 시설 직렬, 연구직렬 등 모든 직원들이 180명에 지나질 않고 오히려 23개시군 중 박물관이 없는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담당자는 모두 250명에 달합니다. 문화재 업무 담당자가 더 적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업무의 양과 비중으로 보면 몇 배나 차이가 나는데도 말입니다.

분명 제도는 매년 법적으로 잘 정비가 되고 있고 금번 국가유산법을 근거로 하는 국가유산진흥원 설치 등 문화재청 산하 기구의 설립은 늘어 가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보는 인력은 몇 년째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관리 인력 증설과 기구 확대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아는 현실입니다. 이번 국가유산법 제정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보는 담당자와 조직이 증원되고 정비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우려가 예상되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재의 보수비는 국비비율이 70%입니다. 그리고 시도마다 사정은 조금씩 다르지만 시도문화재의 경우 대부분 시도비와 시군비가 각각 50%씩 공동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또는 향토유산에 대한 조례가 있는 경우 보수비는 책정되지만 비율에 있어서는 천차만별이며 제가 근무하는 문경시의 경우 시비 70%, 소유자 자부담 30%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시도문화재 보수비와 건수는 국가문화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번에 제정된 국가유산법에 의하면 시도문화재에 대한 지원은 없고 오히려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정문화재는 보수를 하지 못해 방치가 될 수 있는 반면에 지정되지 아니한 비지정문화재에 국비가 투입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시행령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

이은하 선생님의 「국가유산 체제 전환의 의미와 발전 방향」, 정상우 선생님의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향후 과제」 발표문을 잘 읽었다.

우선, 이은하 선생님께 몇 가지 부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은하 선생님께서는 발표문에서 국가유산으로의 체제 전환에 따른 경제 효과, 사회적 효과 등에 대한 기대치를 설명하셨다. 생산유발효과 2900억~3500억 원, 취업유발효과 2500~2900명 등이 그 사례인데, 이러한 전망의 근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사회적 효과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부연 설명 부탁드립니다.

두 분 모두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주셨다. 이은하 선생님은 국가유산산업, 기후변화, 국가유산 복지, 포괄적 보호체계, 매장유산 발굴, 무형유산 등의 측면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셨다. 정상우 선생님은 국가유산기본법 이후의 과제로 체계화, 지역화, 산업화, 세계화 등을 제시하셨다. 모두 중요한 과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이것은 현행 문화재 체제일 때도 여전히 적용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국가유산 체제에서 특히 더 주목해야 할 과제가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

국가유산 체제는 기존 문화재 체제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국가유산 체제는 용어를 바꾸고 분류 체계를 보완하고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했다. 여러 변화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인식의 측면’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재/문화유산/국가유산에 대한 인식의 심화와 확장으로 성과를 내야 한다는 말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논의나 대책도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존의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분류(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는 사실 문제가 적지 않았다. 분류 자체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물론, 행정 집행의 과정에서는 큰 문제 없이 관리할 수는 있었다. 그런데 용어상 개념상으로는 문제가 있었고 이런

문제는 인식상의 문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국가유산 체제 개편의 중요한 핵심의 하나는 ‘합리적 선진적 분류 체계와 인식’이라고 본다.

이제 국가유산은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으로 분류된다.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중복 등의 문제가 드러난다. 특히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 각각의 하위 항목이 좀 더 정교해져야 하고 좀 더 객관적이어야 한다. 하위 항목을 예시할 때 명확한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그래야 국민이 더 명쾌하게 이해하고 학교에서도 효과적인 수업이 이뤄질 수 있다. 예시를 보면, 자연유산에 역사문화경관이 들어가고, 담양 소재원이 들어간다. 담양 소재원을 자연유산에 포함시키는 것은 여전히 어색하고 비합리적이다. 혼합유산(자연유산+문화유산)이라면 모를까, 자연유산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쉽지 않다. 국가유산 체제로 변화하고 분류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기존 문화재보호법상의 인식에 갇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다. 이런 점에 대한 성찰과 인식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점에 대한 이은하, 정상우 선생님의 고견도 부탁드립니다.

- 현재의 변화를 문화재 체제에서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 또는 1962년 체제에서 2023년 체제로의 변화로 표현할 수 있음. 전자는 재화 개념에서 유산 개념으로의 변화를 강조하는 것이며, 후자는 시간 개념, 즉 과거와 미래를 대비시키는 표현임. 문화재분야에 있는 내부자 시선으로 보면, 현재 엄청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지만 외부자들은 이런 변화와 그 파장을 잘 알고 있지 않음.
 - 전문가 및 내부자 시선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눈높이에서 문화재 명칭 변경의 의미를 알리고,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서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문화재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바꾸고, 분류체계를 문화유산, 무형유산, 자연유산으로 체계화하고, 문화재청에서 국가유산청으로 조직명을 바꾸는 것은 외형적, 형식적 출발점에 불과한 것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당장 시급한 것은 하위 법령·법규를 여기에 맞춰 정비하는 것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국가유산기본법에 담고 있는 사항들을 어떻게 확장하고 심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전략과 로드맵 마련이 필요함
- 국가유산기본법에서 새롭게 추가되거나 강조된 사항으로는 ① 포괄적 보호체계의 마련, ② 산업육성(←문화재보호법에서의 정보화), ③ 국민복지 증진, 지역발전 이바지임. 국가유산 체제로의 변화와 국가유산기본법에서 담고 있는 위 내용은 결과적으로 국가유산을 매개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를 키우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읽을 수 있음. 새로운 국가유산 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국가유산의 수평적 네트워크 강화라는 관점에서 제언을 하면 아래와 같음.
 - 네트워크는 다양한 노드와 네트워크의 강도로 표현할 수 있음. 노드에 해당되는 것이 거버넌스 또는 조직에 해당됨.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기관명을 바꾸는 것과 동시에, 국가유산 체제에 걸맞은 조직개편(부서명, 지역관련), 문화재청-중간매개조직-지자체간

효과적인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함. 거버넌스 유형에 따라 일하는 방식이 달라짐.

예) 문화분야의 경우 지역에 17개 광역문화재단, 115개 지역문화재단이 설립됨.

- 특히 지정·등록되지 않은 유산들도 국가유산 체제에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방향(목록주의)으로 바뀌기 때문에 지자체의 전담부서와 전문 인력 확충이 병행되어 추진되어야 할 것임.
- 국가유산을 매개로 공동체 활성화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네트워크의 강도는 강해짐. 즉 국가유산 체제에 관계된 주체와 조직이 많아질수록, 국가유산에 관심에 많아질수록 강도는 강해짐. 이와 관련해서 문화재보호기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하고 일반회계와 기금과의 차별성을 가지는 것이 필요함. 문화재보호기금을 영국의 국가유산복권기금처럼 진흥사업 쪽으로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한 보호 활동에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 재설정이 필요해 보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의 의미와 정책과제

- 법률 시행에 대비한 전략방향의 모색 -

조 홍 석

(재)역사문화환경정책연구원 원장/ph.D

문화재청 전문위원(사적/고도, 비상근)

제도의 변화과정

잡은 전란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급속한 산업화 시대를 거치며 잃어버렸던 우리네 유산의 가치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한편, 훼손된 역사문화환경의 회복을 위한 노력이 시작된 지 60여년이 지났다.

2000년대 초반부터는 한층 안정된 제도적 기반과 새로워진 문화적 환경 속에서 국제적으로 정립된 보존철학과 변화된 시대적 패러다임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산보호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그 결실로 ‘지정주의’에서 ‘목록주의’로 관리개념 변화가 모색되었고, ‘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한 국원칙’(2022.12)이 선포되었으며, 지능정보화 및 재난예측 관리, 콘텐츠 개발 등의 개념이 문화재보호법에 추가되었다.

공간적으로는 문화재 주변 환경의 일체적 관리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설정, 보존영향 검토제도를 도입하였고, 시대적으로는 근현대유산의 멸실 및 훼손을 예방하기 위해 등록문화재를 도입한 후, 시·도등록문화재 및 면단위 개념의 근대역사문화공간으로까지 관리 범위를 확장하였다.

또한, 유네스코와 북한 등을 대상으로 한 대외교류 및 협력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국외소재문화재를 포함하여 관리목적 및 필요에 따라 관리대상의 범주도 확대하여 왔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역사문화환경 조성을 위해 면단위 권역(광역)유산에 대한 보존·육성 관계 법령(고도, 신라왕경, 풍납토성, 역사문화권 등)이 다수 제정되었으며, 유산 유형의 다양성을 고려하기 위해 매장문화재(2011)를 비롯하여 무형유산, 세계유산, 자연유산 등에 관한 법률도 새롭게 마련됨으로써 포괄적 관리를 위한 기틀이 마련되었다.

이후, 최근까지 문화재 보호를 위해 이루어지는 다양한 규제 및 이로 인한 국민적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장문화재 조사경비 지원 확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규제범위 및 방식개선, 경미행위의 확대를 통한 지자체 관리권한 강화, 문화재 관람료 지원기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도적 개선노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과 함께 하는 소통행정’이라는 정책 방향을 견지해 왔다.

새로운 시대의 준비,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이러한 과정을 배경으로 2023년 5월 16일, 국가유산법이 제정·공포되었다.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은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는 한편,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현안의 극복과 국제기준의 준용, 그리고 유산의 미래가치 창출이라는 시대적 명제를 강조하고 있다.

이는 2020년경부터 새로운 법률제정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다양한 계층 및 분야의 의견수렴과정이 이루어낸 ‘공론화의 산물’이라 하겠다.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의 가장 큰 특징은 관리대상의 개념이 변화된다는 것이다. 법률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관리대상이 ‘문화재’에서 ‘국가유산’으로 변경되는 것으로, 물리적인 ‘재화’에 한정된 의미로 해석될 우려가 있는 표현을 보다 포괄적이고 표준화된 개념으로 치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표현의 변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사물, 가치, 행정, 규범적 의미에 한정된 개념에서 벗어나 계승, 활용, 통합, 미래 등 새로운 개념으로의 확장성이 강화됨을 의미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참고하여 유산 보호의 철학과 원칙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유산’으로서의 개념을 보다 강조함으로써 ‘어제를 담아 내일에 전한다’라고 하는 문화재청의 정책기조를 적극적으로 구현하고자 하는 실천적 의지도 담겨있다 하겠다.

유산의 유형분류 체계 및 모호한 개념의 정립 필요

따라서, 제도의 본격적 시행에 앞서 보다 체계적인 제도기반 마련 및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이상의 개념을 보완하는 하위 개념의 정립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유산의 유형분류기준에 대해 발제자를 비롯한 전문가분들의 경험과 연구에 기반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한다.

예컨대, 지난 정책토론에서도 언급되었던 바와 같이 무형문화재의 세부 유형분류기준을 비롯하여 동산문화재 등 모호한 개념의 구체화 및 국보, 보물, 유형문화재, 기념물 등 기존 분류체계의 개선 및 국가유산과 지방유산의 구분 표준화 과정을 통해 유산의 가치특성 및 관리 효율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합리적인 관리체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문화재 관리현장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온 주요 용어(자산과 유산, 보호와 보존(보전), 정비와 관리, 지정구역과 보호구역, 현상변경과 보존영향 검토, 동산문화재와 부동산문화재, 수리와 보수, 수복과 복원 등)의 개념적 정의에 대한 명확성도 함께 높여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권역유산 및 근현대유산의 법률적 기반 강화 필요

다음으로,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의 또 다른 특징은 다양한 문화재청 소관 법령의 기반이 되는 ‘기본법’의 성격을 지니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유산기본법은 앞서 제도 변화과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간 필요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 걸쳐 제정되어 온 개별법령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본법’의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기본법으로서 현재 문화재청이 관리하고 있는 소관 법령의 제정취지(목적) 및 기본개념(원칙), 관리방식 및 절차 등에 있어 포괄적이고, 균형감있게 반영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법 제정과정에서 검토되었던 기존의 면단위 권역(광역)유산 관련 법률(고도, 신라왕경, 풍납토성, 역사문화권 등)에 대한 법률적 체계보완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미래가치 창출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등에서 주목받고 있는 근현대유산의 효과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등록문화재 제도의 강화방안(법률제정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이 또한, 전체적인 기본법의 체계 내에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 생각되는데, 기회를 빌어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해 본다.

역사를 담아, 미래로....

내년 5월, 우리는 변화된 개념체계에 기반한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고 있다.

어느 때보다 제도안정화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따라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은 무형과 유형, 과거와 현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재와 주변, 국민과 지역, 보존과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포괄해야 하고, ‘대립’이 아닌 ‘상생’을 키워드화 함으로써 우리 ‘모두의 유산’이라는 인식에 기반해야 할 것이며, 이를 향유하고 함양함으로써 후대에 보다 증진된 가치를 물려주어야겠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발제와 토론 과정이 ‘국가유산 관리행정’의 향후 방향과 과제를 보다 구체화 하는데 일조할 수 있길 기대하며, 새로운 법률 시행에 앞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명제를 다시금 되새겨 본다.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활용정책 제언

진 병 길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회장

문화유산 정책이 보존 중심에서 점차 활용을 통한 국민문화유산 향유권 확대로 점진적인 발전이 이어져 왔습니다. 문화재청에서는 활용정책과를 개설한 이래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을 통해 전국이 산재한 우리 문화유산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덕분에 23년도에는 417건의 다채로운 사업을 추진 중이며 제가 회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한국문화유산활용단체연합회 라는 전국 연합회를 2018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문화유산 활용이 보존이다’라는 기조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가유산기본법에서는 특히 제7조 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에서 활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7조(국가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

1. 국가유산의 유형적·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
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
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
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국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
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균형을 이루며,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그동안 문화유산으로 활용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였을 때, 우리 단체를 비전문가로 인식을 하거나 진정한 문화유산을 위한 활동이 아니라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이번 국가유산기본법 도입으로 새로운 가치 창출 도모와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조화라는 기본원칙이 수립된 것은 활용정책의 비약적인 발전이 향후 추진될 수 있음에 많은 기대가 있습니다. 이번 국가유산 체제로의 전환에

따라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이 해소되길 기원하며 아래의 몇 가지 제언을 드리겠습니다.

1. 국가유산기본법 하위법령으로의 국가유산 활용법(가칭) 제정

현 문화재 관련 법률에서는 문화재 유형이나 기능을 중심으로 분법화 되어 있어서 문화유산 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재 활용 진흥을 촉진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도모하고 문화재 활용사업에 대한 법적 기반을 조성하려는 하기 위하여 “문화재 활용 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정 의원 대표 발의, 22년 2월)이 발의되었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하고 있습니다.

국가유산 기본법에서는 복지, 활용, 산업 육성에 관한 방향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해당 법률안을 ‘국가유산 활용법(가칭)’으로 정비하여 국가유산기본법의 하위법령으로 함께 제정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함께 보태어 주신다면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 활용 전문단체(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

문화유산 보존 분야는 세분화된 교육/연구 기관을 통해 전문인력을 양성 및 관련 기관들이 폭넓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활용분야는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관이 적으며 활동하는 단체 규모 또한 크지 않습니다. 우리 연합회에서 지역문화유산 활용사업에 참여하는 실무자 대상으로 현장역량 강화 교육 사업을 추진 중이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사업 역량 강화에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활용분야의 온전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아서 대부분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나 기업들은 지자체와 정부의 다양한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 사업에 참여를 통해 단체를 경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화유산 활용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서 직원의 고용 기간이 결정되며 최저 임금 수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현장에서 경쟁력 있는 인력을 육성하기 무척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습니다. 활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인재를 발굴 및 지원해야 하며 그 중심에는 우리와 같은 **활용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의 육성 정책이 적극적으로 수립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번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라서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활용사업을 추진하는 전국의 단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자리를 잡아갈 수 있기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3.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과 네트워크 형성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는 관광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있습니다. 문체부에

서도 지역 관광 활성화에 문화유산을 중요한 자원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두 정부 기관의 관광 정책에서 본질적인 방향의 차별화가 요구되지만, 문화유산 관광을 누리는 국민으로서는 그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문화유산 활용 분야에서 활동하는 우리 단체에서는 문화유산 보존과 가치 확산에 그 방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국가유산 활용정책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인력은 우리 회원사를 비롯하여 문화유산 활용사업을 참여한 경험이 있는 민간에게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활용 전문인력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정례적인 정책 개발을 위한 민간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폭넓은 층위의 네트워크 형성한다면 실효성 있는 문화유산 활용정책 추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4. 국가유산 체제 도입 적극 홍보

2024년부터 근본적인 문화유산 정책이 대전환되지만, 현장에서는 이를 수용하고 변화에 적응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홍보 (방송, 유튜브, 홈페이지, 인쇄물 등)와 아울러 현장에서의 관계자 대상 설명회와 교육이 필수적으로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번 국가유산 체제 대전환으로 인해 지속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확대된 분야가 있을 것이고, 정책 여건 변화를 적응에 어려움을 당면한 분야도 분명 있을 겁니다. 현장에서 소외되는 분야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감도 높은 국가유산 정책 대전환 행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활용정책의 대상을 폭 넓게 확장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의 소유주가 살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소유주·지자체·민간의 활용단체가 함께 관리와 활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도입을 기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memo



memo



memo